
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 1096 호

2013년 3월 11일 월요일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-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직권말소 2
공고 제2013- 1호 공시송달 공고

고 시

- 고시 제2013- 17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3
및 지형도명 고시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 남동구

편집 : 홍보미디어실

공 고

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3-1호

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
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영업시설이 멸실되고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90조(영업소 폐쇄등의 알림)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13년 3월 11일

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

1. 제 목 :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
2. 공고기간 : 2013. 3. 6 ~ 2013. 3. 19
3. 당 사 자

업 종	신고번호	업 소 명	소 재 지	업주명	비고
일반음식점	구월3-711	꼬꼬시티	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3-10	장용숙	
"	구월3-791	해콩	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06-1	김기쁨	

4. 처분내용 : 영업신고 직권말소
5. 사 유 : 영업장(영업시설물) 무단멸실
6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0조
7. 사전통지내역
 - 기 관 명 : 인천광역시남동구청
 - 담당부서 :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(032-453-2622)
 - 의견제출기한 : 2013.3.19. 까지
8. 기 타 :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말소(3.20일 예정)

고 시

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-18호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 및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와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.

※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(☎ 453-295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3년 3월 11일

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

1. 결정(변경) 취지
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의 결정(변경) 사항임.

2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 조서 : 교통시설

1) 도로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458	20 ~ 25	보조간선	1,090	중로 1-168	중로 1-325	일반 도로	-	2011.7. 15	
변경	중로	1	458	20 ~ 29	보조간선	1,086	중로 1-168	중로 1-325	일반 도로	-	-	일부구간 선형변경

2) 도로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1-458	중1-458	◦ 노선변경 -연장:1,090m→1,086m -폭원:20~25m→20~29m	◦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이용편의 접근성 향상 및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으로 인한 기 결정된 중로1-458호선의 선형 및 폭원 변경

3. 지형(결정)도면 : “별 첨”(게재생략)